

도화2동경로당설치·운영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3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1. 24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4. 11. 29.

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위원회(2004. 12. 3)
상정, 심사, 가결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정호 사회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,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제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신축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추진경위

- 1998년 도화동 432번지에 소재하던 경로당이 도화2구역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아파트 조합원이 아닌 단독주택 거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여 인근공원, 도로변에서 지내던 중
- 도화동 231-15 소재 건물주인 이강진이 2003년부터 지역 어르신

들의 센터로 제공하여 지내 왔으나 건물주인이 현 건물에 대한 매각,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

- 다시 도로변에서 지낼 처지에 놓이게 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요청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인근에 소재한 경로당은 아파트거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립경로당으로 단독주택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구립 경로당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부지를 매입,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다. 건립부지

연번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단위: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	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 (㎡)				주소	성명	
1	대지	도화2동 188	92.60	666,100	2005	경로당 신 축	도화2동 188	정경자	
		도화2동 189	52.90						
2	건물	도화2동 188	81.92						
		도화2동 189	21.75						

라. 신축규모안

- 대지 : 145.5㎡(약 44평)
- 건물 : 160.0㎡(약 49평)
 - 지상 1층 : 87㎡(약 26평)
 - 지상 2층 : 73㎡(약 22평)
- 소요예산(추정) : 666,1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김건재 전문위원)

- 0 경로당설치·운영계획(안)은 지방자치법(2004.1.29 법률제7128호) 제35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(2004.3.22 법률제7212호)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음.

0 도화2동 경로당 설치에 대한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, 건립부지는 마포구 도화2동 188번지 외 1필지로 145.5㎡, 건물면적은 1층:87㎡, 2층:73㎡로 총 160㎡로 신축예정이며 추정 소요예산은 666,100천원임. 도화2동 경로당은 아파트 내 사립경로당 3개소 외 신축예정지 인근에 사립경로당(홍문)1개소가 있으나 홍문경로당 시설이 협소하고 주변 거주 노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2004년 9월 어르신들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도화2동 231-15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설치·운영계획(안)을 구의회(제106회 임시회)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고, 금번 구의회(제2차 정례회)에 인근 타 대상지를 선정하여 경로당설치·운영계획(안)을 제출하게 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송대섭 위원) : 도화2동 주민수와 경로당수는?
- 답변요지(김정호 사회복지과장) : 주민수는 15,000명 정도이고, 경로당은 4개소임.
- 질의요지(이종일 위원) : 노인 쉼터기능의 경로당 건립은 자제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노인작업장과 같이 기능성이 있는 노인정건립이 생산적이고 능률적 아닌가?
- 답변요지(김정호 사회복지과장) : 현재 우리 관내에도 소일하며 작업장을 운영하는 다목적방이 있음.
- 질의요지(박영길 위원) : 경로당 건립시 지금과 같이 원칙이 없는 경우 난립이 우려되고, 만약 경로당 건립이 시급하면 임대를 활용하면 됨. 앞으로 노인정의 대형화, 다기능화로 유도할 의사는?
- 답변요지(김정호 사회복지과장) : 검토하겠음.
- 질의요지(정해원 위원) : 운영 계획안은 먼저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왜 동시에 제출하였는가?

- 답변요지(김정호 사회복지과장) : 대상지 선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동시에 제출한 것임.
- 질의요지(운동현 위원장) : 2005년도 초 구의회 업무보고시 「경로당 운영 7개년 계획」을 확정 보고하여 소규모 경로당이 건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

경로당설치 · 운영 계획안(案)

(도화2동경로당 신축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11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 및 제34조 1항,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7조 1항,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신축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

2. 추진경위

- 1998년 도화동 432번지에 소재하던 경로당이 도화2구역 아파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아파트 조합원이 아닌 단독주택 거주 어르신들이 열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여 인근공원, 도로변에서 지내던 중
- 도화동 231-15 소재 건물주인 이강진이 2003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로 제공하여 지내 왔으나 건물주인이 현 건물에 대한 매각,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
- 다시 도로변에서 지낼 처지에 놓이게 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요청이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인근에 소재한 경로당은 아파트거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립경로당으로 단독주택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구립 경로당의 건립이 필요 할것으로 부지를 매입,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건립부지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 (단위:천원)	취득 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소유자 (주소,성명)	비고
	지목	소 재 지	면적 (㎡)					
1	대지	도화2동 188	92.60	666,100	2005	경로당신축	도화2동 188 정경자	
		도화2동 189	52.90		"	"	"	
2	건물	도화2동 188	81.92		"	"	"	
		도화2동 189	21.75		"	"	"	

4. 신축규모(안)

- 대지 : 145.5㎡ / 건물 : 160㎡(1층87.㎡/2층73㎡)
- 추정소요예산 : 666,100천원

5. 근 거

- 사회복지사업법(개정2000.01.12 : 법률제6160호) : 제4조 1항 및 제34조 1항
- 노인복지법(개정2000.01.12 : 법률제6124호) : 제4조 및 제37조 1항
- 지방자치법(개정:2002.3.25 : 법률제6669호) : 제35조 제1항 7호

【 위 치 도 】

위치	대지	면적	단위
	마포구 도화2동 188	92.60	㎡
	“	52.90	㎡

